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1.29. 장덕준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: 2020.1.29.
- 다. 상정일자: 제235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2.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흥민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기능(안 제2조)
- 보조금 지원(안 제3조)
-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(안 제4조)
- 지도 및 감독(안 제5조)
- 표창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장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1조)에서는 목적에 관한 내용임.
 - (안 제2조)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주민합의 도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마포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 - (안 제3조)에서는 마포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,
 - (안 제4조부터 안 제6조)까지는 마포구협의회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,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,
 - (안 제7조)에서는 지역의 통일기반 구성에 기여한 마포구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조례안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92조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,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

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조례 제정 전 상위법 근거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만큼 사업비와 운영비가 비목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정산 시 지출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 처음으로